

KT노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KT노동조합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허진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김겸(02-2272-7114)



2면 - 직장단체보험 보장수준 확정

가입 대상자는 상무대우이상을 제외한 전직원(전직 지원후직자 포함)으로 신규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며 퇴직자는 보험만료시점 즉 올해 퇴직자는 200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해지된다.

“조직개편문제 전향적 검토하겠다”

노사대토론회, 지방본부위원장·지역본부장이 한자리에서 공감대 형성



이재식 지재식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노사대토론회는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본부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앙중심의 토론회와 의사진행방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노사대토론회는 이미 지난해 말 각 지방본부토



이용경

론을 통해 걸려진 안건이 다시 논의됐다. 토론회는 영업·지사·망·공통분야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영업분야는 상품보상금 지급, 출장비 현실화, 활동비, 신상품 출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사는 VOC문제, 망은 집중운용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조직개편에 대해 노사가 뜨거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회사는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조직개편에 대한 고집은 피우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토론 시작에 앞서 지재식위원장은 “노사가 보여주지 못한 토론회는 현업의 실정을 체감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용경 사장은 “지난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올해 지역본부에서 토론회를 거친 만큼 현장의 생생한 내용이 잘 노출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노동조합 8대 집행부는 출범초기부터 변화를 주장해왔으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기초는 지난해 첫 노사대토론회에 이어 지방본부토론회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이 사장과 임원진에게 현장의 정서와 문제의 심각함을 직접전달하고 노사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정례화된 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실행될지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

성명서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내자

지난 제33차와 34차 두 번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계획된 단상점거, 신년 살포 등 극단적인 폭력행사로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KT노동조합은 자금의 폭력 사태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운운하며, 이념과 정파적 분제로 돌려 본질을 호도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조합원과 노동운동의 대의를 팔아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배척되어야 하며 응징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자 집행기구인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무력화된 점이다.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공간으로, 그 대표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KT노동조합은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 회복과 대의원대회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서 현 폭력사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조운동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적 위기를 극복하여, 단결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 조직의 결의와 실천을 통해 조직의 민주성과 대의원들의 대표성이 회복 되어야 하며,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걸고 전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총회되는 결연한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의원대회는 70만 민주노총을 지탱하는 근간으로 그 민주성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위해 KT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역할을 집결할 것임을 결의하며, 민주노총 전조직의 비상한 결의와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15일
KT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외이사 후보에 이병훈 교수 추천

위임장 1.34% 확보함에 따라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요건 갖춰



1월 25일 조합원들로부터 1.34%의 위임장을 확보해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병훈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노동자 특별위원회 공익위원 ▲현 노동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기획단 연구위원 ▲현 노동부 근로자복지 정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현 노동부 정책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이념평가 TFT 등 노동정책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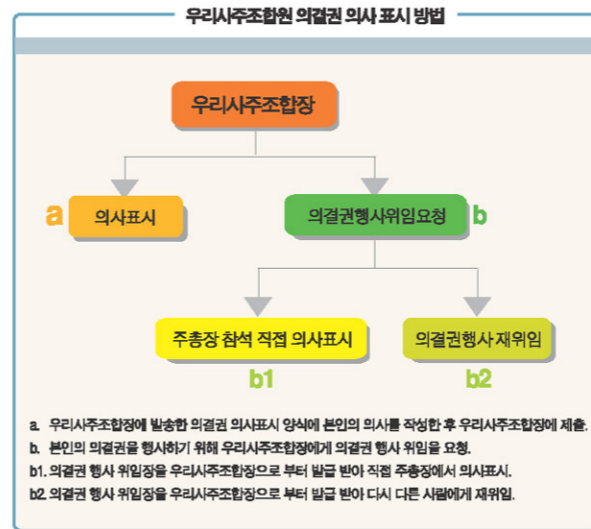
현 법제상으로는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 발동은 주총 6주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집중투표제 실시 제안은 주총 1주전 주총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KT의 사외이사는 8명이며 오는 3월이면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2005년 주총에서 교체예정 사외이사는 ▲임주환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슈트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이다.

<우리사주조합원 의사표시>

- 의사표시 기간: 주총공고일 전까지
- 표시방법
- ▶조합원:집중투표시 이병훈 후보만주식수 기표
- ▶지부장/대의원:직접행사
- 우리사주조합 의결권행사 본인 위임요청서
- 우리사주조합원 의결권행사 위임장 조합장이 발송



a. 우리사주조합장에 발송한 의결권 의사표시 일시에 본인의 의사를 작성한 후 우리사주조합장에 제출.
b.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
b1.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우리사주조합으로 부터 발급 받아 직접 주총장에서 의사표시.
b2.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우리사주조합으로 부터 발급 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

위임권이 결정적인 역할 할 것

주총회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중에서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집중투표를 통해 주총회 때 현 경영진이 추천한 2인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이 표대결을 통해 이사선임이 결정되게 된다. 이때문에 조합원이 위임한 표의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급계획 및 일시

※ 8월, 11월 지급 차등 미확정에 따른 조치 향후 별도 노사간 협의로 결정 예정

구분	효도휴가비	성과급	차등을	지급일
2월	100%	50%	2.4	보수지급일
4월		경영성과 (0-150%)	호봉제 ±20% 연봉제 ±45%	
6월		100%		
8월		100%	차등미확인	
9월	100%		9.15	보수지급일
11월		100%	차등미확인	
계	200%	350%~500%	호봉제 ±30% 연봉제 ±75%	

개최일	지방본부	장소	시간
21	강북지방본부 강원지방본부	여의도지점 3층 강당 본부1층 대회의실	10:00 13:30
22	강남지방본부 서부지방본부	본부7층 대회의실 서부망건설국 회의실	10:00 13:30
23	전남지방본부 전북지방본부	지리산수련관 대강당 본부3층 대강당	09:00 13:30
24	대구지방본부 부산지방본부	본부4층 강당 본부6층 회의실	10:00 15:00
25	충남지방본부 충북지방본부 본사지방본부	도고수련관 대회의실 본부8층 회의실 본사 대강당	10:00 13:30 16:00
28	제주지방본부	본부 대강당	14:00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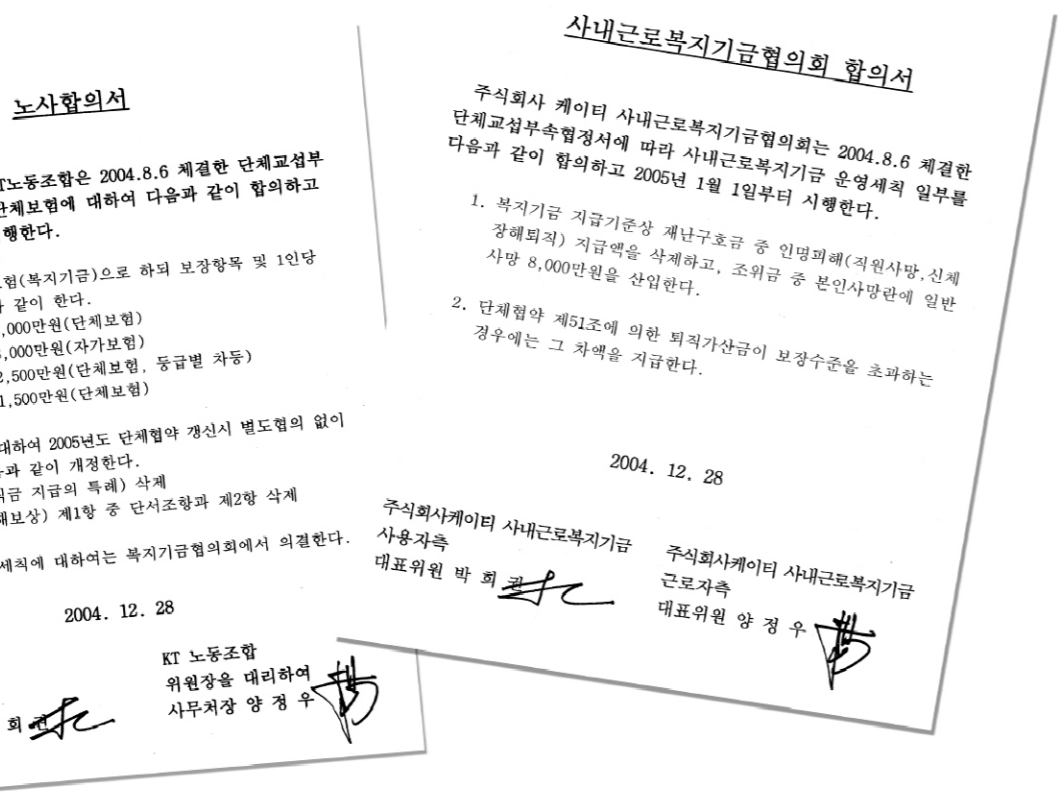
큰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자갈과 흙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자라려면 지랄 수록 뿌리는 더 깊고 더 넓게 뻗어갑니다.

노동조합이 굳건히 서있을 수 있는 것도 조합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여러분은 그러한 조합원의 대리인입니다. 대의원 여러분이 굳건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주십시오. 토론은 뜨겁게 그리고 결의는 힘차게 해주십시오.

직장단체보험 보장수준 확정

업무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보장... 재해·일반 사망시 8,000만원 지급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했던 단체보험에 대한 세부 보장수준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가입 대상자는 상무대우이상을 제외한 전직원(전직 지원휴직자 포함)으로 신규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며 퇴직자는 보험단료지급 즉 유효 퇴직자는 200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자 정년 및 명예퇴직자는 제외된다. 보장항목별 보장내용은 <표1>과 같으며 보장기간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 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컸다. 또한 KT는 장기근속자라 할지라도 1999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수령액이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퇴직하게 됐을 때 받을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크다.

노동조합은 재해를 당한 조합원과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만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직장단체보험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작년 8월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당시 1인당 연 12만원을 기준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에 1억원 정도의 보상을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9월부터 보험수가를 30%인상해 예상보상수준보다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처음 실무협에서 보험사는 산재사망 1억, 재해사망 4천만원, 질병사망 4천만원, 재해장해 2천5백만원, 암진단 1천5백만원(4종류)을 제시했다.

이후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산재사망에 비준을 두고 유리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각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수준은 재해사망 6천만원, 질병사망 6천만원, 재해장해 2천5백만원, 암진단(보험약관적용) 1천5백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은 여전히 수준에 미달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후 12월에 이르러서야 노사양측은 당초 단체교섭 합의에 부합하는 세부항목을 찾기 위해 보상항목별로 분리하여 단체보험과 자기보험(복지기금운영)을 겸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보장항목	보장금액	지급방식	추진방법
재해사망	8,000만원	정액지급	단체보험 (보험사)
재해장해	2,500만원	등급별 차등	
암진단	1,500만원	정액지급	복지기금
일반사망	8,000만원	정액지급	

Q 단체상해보장보험이란?
1) 불의의 재해에 대비한 재해보상제도로서 재해시 가입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산재보험과 다르게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의, 장소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3) 회사가 사원을 수의자로 하여 지원하는 보험료는 관련법에 의해 근로소득에 불포함(연간 70만원내)

Q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일이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Q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경우에도 단체상해보장보험의 재해사망에 적용이 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사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금에서 일반(질병)사망으로 처리, 8천만원이 지급됩니다

Q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 약관상의 재해로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았는데 단체상해보장보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와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재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외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아시아 해일과 같은 재해 피해도 보장

Q 재해장해 및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
재해장해판정 및 등급판정은 병원 진단서 및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Q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Q 보험기간 중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지급이 되나요?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마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미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보험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Q 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Q 암의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나요?
암의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30%(450만원)만 지급이 되고 상피내암 또는 기타 피부암의 경우는 10%(150만원)만 지급 됩니다.

Q 경계성종양이란 무엇인지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암)의 중간 단계입니다. 5년 이상 생존율 99%, 15년 이상 생존율 80~90%

Q 상피내암 또는 기타 피부암이란 무엇인지요?
상피내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으로 자라나는 단계로 "0"기암이라고도 합니다. 암세포가 상피(우리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피부암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얼마가 지급되는지요?
경계성종양 보험금액과는 별개로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Q 보험금 수령은 청구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요?
보험사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회사(인력관리실 복지팀 031-727-1161)에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사원(수익자)을 대리하여 사원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수령후 노사대표(또는 기관장)가 사원/유족에게 전달, 이는 보험사와 보험 지급여부 등과 관련 다음사원 각자가 보험사에 대응하기보다는 회사가 사원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

Q 입사시와 퇴직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신규 가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퇴사시에도 퇴사 당해년도 보장기간내에는 보장이 됩니다. 단, 새로운 보장기간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Q 보험가입 전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 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보험가입 전 진단받은 암으로 인한 "전이암"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 전 진단받은 암으로 인한 "전이암"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보험기간 중 기암종양자가 "전이암"이 아닌 별개의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지요?
"전이암"이 아닌 최초 발생 부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재해사망	보험금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간인서, 사망신고된 제호적등본 등
암진단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재해사망포함 필요시 재확인요청 가능
재해장해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조직검사지 또는 방사선 판독지 등의 결과 기록지

등급 및 지급율	신체장해
제1급 지급율:100%	1. 두뇌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지급율:70%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종에 사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지급율:50%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지급율:30%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관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3.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4.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지급율:15%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경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팔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팔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인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지급율:10%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팔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팔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인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겼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www.itunion.or.kr

130만 IT노동자의 구심 IT연맹!

뜨거운 가슴, 단결, 연대만이 희망입니다.
130만 IT노동자의 투쟁, 생활, 꿈 IT연맹이 함께 합니다.
IT연맹은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KT노동조합

